

의안번호	2214134
의 퇴 인	김문수 의원
회 답 일	2026.01.05.
추계번호	25C6169

직업교육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을 시행하며, ③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600만원 2031년 5,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억 3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58	-	-	-	-	58	12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 (안 제7조)	36	36	37	38	39	186	37
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	12	12	12	12	12	59	12
합 계	106	48	49	50	50	303	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직업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실시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시설 및 사업장이 직업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5항)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3	안 제7조 (직업교육 실시 현황의 조사·분석)	(제1항)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직업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8조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항)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직업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제3항)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업교육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산업계·학계·직업교육기관의 관계자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안 제9조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항)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	안 제15조 (전문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제1항)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문직업교육과정을 다른 전문직업교육과정보다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안 제16조 (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제1항)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정책 지원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17조 (현장실습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기관의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산업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7조 (현장실습 지원)	(제2항)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및 산업체와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8조 (소외계층 및 중년·장년층의 특별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직업교육 소외계층이 차별 없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기관이 중년·장년층 및 고령층의 직업 전환 및 재취업 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19조 (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제1항) 직업교육기관은 현장 직무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 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직업교육 교원으로 우대하여 임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수 등 직업교육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안 제21조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습 과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기관에 시설, 장비 및 보호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안 제22조 (직업교육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의 발전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직업교육 참여를 독려하며 산업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권고적·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2	안 제6조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7조 (직업교육 실시 현황의 조사· 분석)	○	
4	안 제8조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	
5	안 제9조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	
6	안 제15조 (전문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전문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규정함 · 이에 인증·평가 운영 및 재정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전문직업교육과정 인증 기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에 따라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직업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음
7	안 제16조 (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운 영)	×	·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센터의 규모, 수행 사업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
8	안 제17조 (현장실습 지원)	×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재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지원금 및 기업현장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각 '25년 기준 176억원, 120억원이 편성됨 · 한편, '25년 교육부는 학교기업 지원을 위해 66억 7,2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해당 예산에는 현장실습 등 운영경비가 포함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8조 (소외계층 및 중년·장년층의 특별지원)	×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저소득층 및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재취업과정을 특별히 지원하도록 규정함 ·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특별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 존재하여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훈련, 상담 등을 통해 저소득층, 중장년층의 구직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기준 1조 108억원이 투입됨 · 아울러, 전국 38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중장년층의 이·전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로 '25년 183억 4,300만원이 편성됨 · 참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직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월평균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주가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안 제19조 (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교원을 임용하고 및 이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직업교육교원의 채용 규모, 지원 및 보수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은 관련 분야의 직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하는 유사 제도를 두고 있음
11	안 제21조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장비, 보호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 · 참고로,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현장실습 협의체를 운영하고 부당대우에 대한 실습생의 권익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12	안 제22조 (직업교육기관 지원)	×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지원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동 규정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만을 추계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직업교육 기본계획(안 제6조), ②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안 제7조), ③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운영(안 제8조 및 제9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6조) 제정안 시행 시 5년 주기로 계획 수립 비용이 지출되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 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연구용역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 －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안 제7조) 교육부 및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 제정안의 규정에 따라 매년 조사·분석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안 제8조 및 제9조)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제정안의 조문을 참조하여 국가직업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정원 15인 중 당연직 위원 정수를 2인으로 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연구
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800
만원으로 추계

[표 2] 직업교육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주제	소관	사업연도	연구용역비
평생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	교육부	2020	50
전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 달체계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2021	5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 평생교육체제 중 장기 개편	기획재정부	2023	50
직업·평생교육 발전 방안 연구	국가교육위원회	2023	48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58	-	-	-	-	58	12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안 제7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연구
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8,600만원(연평균 3,700만원)으로 추계

[표 4] 직업교육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주제	소관	사업연도	연구용역비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및 취업창업지원 기능 강화 방안 연구	교육부	2019	36
기발굴 신직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21	36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재학생 직업훈련 지원 강화 방안	고용노동부	2021	36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 (안 제7조)	36	36	37	38	39	186	37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운영(안 제8조 및 제9조)

□ 추가재정소요는 위촉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와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

- (위촉위원 수) 제정안의 조문을 참조하여 13인으로 가정
 - 제정안은 국가직업교육위원회의 정원을 15인으로 하고, 교육부장관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조문을 준용함
- (참석 수당)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고려하여 25만원으로 함
 - 동 지침은 위원회 참석비를 1일당 15만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5만원 내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이외 교통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참고로, 위원회 참석비에 관한 집행 단가는 최근 5년간 변경된 바 없음
- (회의 횟수) 국가산학협력위원회의 '25년 회의 횟수를 준용하여 연 2회로 함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9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

[표 6]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	12	12	12	12	12	59	12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